

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

2022. 12.

방송통신위원회

1. 개정이유

- 방송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에 ESG 경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환경 경영 노력 및 ESG 관련 이사회 보고 평가 항목 신설

-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영역 평가 항목에 ‘환경 경영 노력 및 ESG 관련 이사회 보고 평가 항목’을 신설하고 환경경영 목표,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, 친환경 프로그램 편성 등 환경경영 노력과 ESG 관련 이사회 보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(가점 10점 부여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 호

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

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(별표)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.

(별표)

1. 지상파방송사업자(텔레비전방송) - 중앙

■ 평가항목 및 척도(만점 700점)

① 내용영역(245점)

평가항목	배점 (245)	평가척도
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	40	※ 평가대상 : 자체편성비율 50%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중 네트워크 본사(KBS, MBC, SBS) - 방통위 시청자평가지수(KI) 결과 활용 · 방송프로그램 평가(품질, 만족도), 채널성과 평가(다양성, 창의성)
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	55	-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,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,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,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등을 평가
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	50	-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평가
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	35	- 자체 프로그램 품질 평가제도 실시여부, 결과공표 등 평가
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	35	-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, 평가원 운영 및 보고서 등 평가
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	30	-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,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, 의견반영 결과 등 종합 평가

② 편성영역(295점)

평가항목	배점 (295)	평가척도
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	55	- 재난방송/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, 교육실적(온라인 실적 포함) 등 상대평가 ※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 설정
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	50	- 07시~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8%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- 07시~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4%를 만점으로 절대평가

평가항목	배점 (295)	평가척도
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	50	- 자막방송 편성비율 - 수어방송 편성비율 -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- 「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」 <별표>에서 정한 연도별/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「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
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	50	※ 평가대상 : 자체편성비율 50%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- 방송분야(보도 40%, 오락 60%) 편성 비율 평가
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	25	- UHD 프로그램 편성실적 등 평가 ※ 평가대상 : UHD 프로그램 본방송 개시 방송사업자
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	50	-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,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/활용,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, 시청자위원회 운영 만족도 등 평가
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	15	-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
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	10 (가점)	- 프로그램 편성실적, 편성시간대 평가
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	5 (가점)	- 재난특보 실시 횟수에 따라 평가

③ 운영영역(160점)

평가항목	배점 (160)	평가척도
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	40	-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-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,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
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·유통상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	15	-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, 표준계약서 활용, 상해/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, 상생협의체 운영 등 평가 ※ 평가대상 : KBS, MBC, SBS, EBS
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	25	- 유동비율, 부채비율 등 평가
장애인/여성 고용 평가	20	-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※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,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'19년 이후 3.1% - 여성 종업원수/평균 종업원수 :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- 여성 간부수/평균 간부수
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평가	15	-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
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	15	-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교육,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, 방송교육,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- 1인당 교육비, 교육비/매출액

평가항목	배점 (160)	평가척도
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	5	-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,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여부,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,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
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	15	-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사후조치, 내부교육 등 평가
아동·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적정성 평가	10	-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표, 담당부서 지정 및 공지 등 평가
환경 경영 노력 및 ESG 관련 이사회 보고	10 (가점)	- 환경경영 목표,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, 친환경 프로그램 편성 등 환경경영 노력 평가 - ESG 관련 이사회 보고 평가

④ 감점

평가항목	평가척도
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32조, 제33조,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-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/ ② 경고 2점/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·수정 또는 중지 4점/ ④ 방송편성책임자·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/ ②+③, ②+④ 5점/ ③+④, ②+③+④ 6점/ ⑤ 과태료 4점/ ⑥ 시정명령 8점/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,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,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,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,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'제1절 공정성', '제2절 객관성' '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' 규정 위반과 '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'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, 그 외 위반의 경우 1.5배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,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)
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	-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,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4조,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: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/ 시정명령 12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.5점 감점하되,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

평가항목	평가척도
	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방송법,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- 방송통신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
※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%로 설정

2. 지상파방송사업자(텔레비전방송) - 지역

■ 평가항목 및 척도(만점 600점)

① 내용영역(155점)

평가항목	배점 (155)	평가척도
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	40	-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
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	35	-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,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,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,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등을 평가
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	40	-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, 평가원 운영 및 보고서 등 평가
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	40	-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,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,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

② 편성영역(295점)

평가항목	배점 (295)	평가척도
지역방송사 자체 제작 및 지역성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	70	- 자체제작 편성비율 평가 ※ 평가대상 : KBS-1 지역총국, 지역MBC, 지역민방 · KBS-1 지역총국 : 자체제작비율 10%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· 지역MBC : 자체제작비율 15%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· 지역민방 : 자체제작비율 20%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-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
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	60	- 재난방송/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, 교육실적(온라인 실적 포함) 등 상대평가 ※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
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	50	-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 -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
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	50	- 자막방송 편성비율 - 수어방송 편성비율 -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- 「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」 <별표>에서 정한 연도별/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「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
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	50	-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,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/활용,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, 시청자위원회 운영 만족도 등 평가
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	15	-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

③ 운영영역(150점)

평가항목	배점 (150)	평가척도
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	35	- 유동비율, 부채비율 등 평가
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	35	-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-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,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
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 평가	15	-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
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	15	-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교육,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, 방송교육,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- 1인당 교육비, 교육비/매출액
장애인/여성 고용 평가	20	-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※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,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'19년 이후 3.1% - 여성 종업원수/평균 종업원수 :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- 여성 간부수/평균 간부수
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·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	10	-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
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	5	-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,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,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,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
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	15	-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사후조치, 내부교육 등 평가

④ 감점

평가항목	평가척도
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32조, 제33조,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-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/ ② 경고 2점/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·수정 또는 중지 4점/ ④ 방송편성책임자·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/ ②+③, ②+④ 5점/ ③+④, ②+③+④ 6점/ ⑤ 과태료 4점/ ⑥ 시정명령 8점/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,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,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,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, 방송법 제74조와

평가항목	평가척도
	<p>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'제1절 공정성', '제2절 객관성', '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' 규정 위반과 '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'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, 그 외 위반의 경우 1.5배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,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)</p>
<p>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</p>	<p>-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,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</p>
<p>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</p>	<p>- 방송법 제4조,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: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/ 시정명령 12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/ 5천만원 초과인 과징금 부과시 22.5점 감점하되,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인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</p>
<p>방송법,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</p>	<p>-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- 방송통신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인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</p>

※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%로 설정

3. 지상파방송사업자(라디오방송) - 중앙/지역

■ 평가항목 및 척도(만점 300점)

① 내용 및 편성 영역(150점)

- 적용대상 : 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TV·라디오 겸영사업자

평가항목	배점 (150)	평가척도
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	60	- 재난방송/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, 교육실적(온라인 실적 포함) 등 상대 평가 ※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
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	35	-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
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	35	-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,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,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
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	20	-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, 제작진 등의 심의담당 여부,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

② 운영영역(150점)

- 적용 대상 : 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

※ 지상파 TV·라디오 겸영사업자의 라디오 운영평가는 TV 평가결과를 적용

평가항목	배점 (150)	평가척도
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	30	- 유동비율, 부채비율 등 평가
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	30	-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-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,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
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평가	25	-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
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	25	-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교육,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, 방송교육,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- 1인당 교육비, 교육비/매출액
장애인/여성 고용 평가	25	-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※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,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'19년 이후 3.1% - 여성 종업원수/평균 종업원수 :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- 여성 간부수/평균 간부수
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·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	10	-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

평가항목	배점 (150)	평가척도
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	5	-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,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,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,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 파기 등을 종합 평가

③ 감점

평가항목	평가척도
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32조, 제33조,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-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/ ② 경고 2점/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·수정 또는 중지 4점/ ④ 방송편성책임자·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/ ②+③, ②+④ 5점/ ③+④, ②+③+④ 6점/ ⑤ 과태료 4점/ ⑥ 시정명령 8점/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,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,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,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,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'제1절 공정성', '제2절 객관성' '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' 규정 위반과 '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'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, 그 외 위반의 경우 1.5배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,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)
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	-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,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4조,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: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/ 시정명령 12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.5점 감점하되,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방송법,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	-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- 방송통신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
※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%로 설정

4. 종합유선방송사업자

■ 평가항목 및 척도(만점 500점)

① 내용 및 편성영역(200점)

평가항목	배점 (200)	평가척도
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	50	- 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
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	30	-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 등 평가
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	30	- 재난방송/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, 교육 실적(온라인 실적 포함) 등 상대 평가 ※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
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	30	- 자막방송 편성비율 - 수어방송 편성비율 -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- 「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」 <별표>에서 정한 연도별/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「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
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	20	-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,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, 의견 반영 결과 등 종합 평가
직접/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	20	- 지역채널에 대한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종합 평가
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	10	-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
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	10	-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,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,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

② 운영영역(300점)

평가항목	배점 (300)	평가척도
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	40	- 유동비율, 부채비율 등 평가
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	40	-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-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,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
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	40	- 매출액 대비 수신료 배분 비율 등 평가
채널공급 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평가	40	- 선정기준 적정성 및 PP만족도 등 평가
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	40	-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,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,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,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

평가항목	배점 (300)	평가척도
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	25	-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
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	25	-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,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, 방송교육,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- 1인당 교육비, 교육비/매출액
장애인/여성 고용 평가	25	-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※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,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'19년 이후 3.1% - 여성 종업원수/평균 종업원수 :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- 여성 간부수/평균 간부수
채널구성의 다양성 평가	25	- 공공·공익·복지·지역 채널의 구성 등을 평가

③ 감점

평가항목	평가척도
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32조, 제33조,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-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/ ② 경고 2점/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·수정 또는 중지 4점/ ④ 방송편성책임자·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/ ②+③, ②+④ 5점/ ③+④, ②+③+④ 6점/ ⑤ 과태료 4점/ ⑥ 시정명령 8점/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,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,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,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,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'제1절 공정성', '제2절 객관성' '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' 규정 위반과 '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'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, 그 외 위반의 경우 1.5배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,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)
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	-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,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4조,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: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/ 시정명령 12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

평가항목	평가척도
	15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.5점 감점하되,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방송법,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	-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- 방송통신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
※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%로 설정

5. 위성방송사업자

■ 평가항목 및 척도(만점 400점)

① 내용 및 편성영역(100점)

평가항목	배점 (100)	평가척도
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	40	- 자막방송 편성비율 - 수어방송 편성비율 -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- 「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」 <별표>에서 정한 연도별/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「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
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	30	- 재난방송/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, 교육 실적(온라인 실적 포함) 등 상대 평가 ※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
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	30	-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,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,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

② 운영영역(300점)

평가항목	배점 (300)	평가척도
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	40	- 유동비율, 부채비율 등 평가
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	40	-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-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,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
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	40	-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,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,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,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
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	40	- 매출액 대비 수신료 배분 비율 평가
채널공급 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평가	40	- 선정기준 적정성 및 PP만족도 평가
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평가	25	-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

평가항목	배점 (300)	평가척도
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	25	-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,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, 방송교육,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- 1인당 교육비, 교육비/매출액
장애인/여성 고용 평가	25	-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※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,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'19년 이후 3.1% - 여성 종업원수/평균 종업원수 :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- 여성 간부수/평균 간부수
채널구성의 다양성 평가	25	- 공공·공익·복지·지역 채널의 구성 등을 평가

③ 감점

평가항목	평가척도
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32조, 제33조,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-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/ ② 경고 2점/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·수정 또는 중지 4점/ ④ 방송편성책임자·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/ ②+③, ②+④ 5점/ ③+④, ②+③+④ 6점/ ⑤ 과태료 4점/ ⑥ 시정명령 8점/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 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, 위반유형을 방송심의를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, 선거방송심의를 관한 특별규정,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,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'제1절 공정성', '제2절 객관성' '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' 규정 위반과 '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'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, 그 외 위반의 경우 1.5배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,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)
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	-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,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
평가항목	평가척도
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4조,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: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/ 시정명령 12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.5점 감점하되,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방송법,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	-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- 방송통신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
※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%로 설정

6.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

■ 평가항목 및 척도(만점 600점)

① 내용영역(215점)

평가항목	배점 (215)	평가척도
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	30	- 방통위 시청자평가지수(KI) 결과 활용 · 방송프로그램 평가(품질, 만족도), 채널성과 평가(다양성, 창의성) 평가
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	50	-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,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,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,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등을 평가
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	40	-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
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	30	- 자체 프로그램 품질 평가제도 실시 여부, 결과 공표 등 평가
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	35	-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, 평가원 운영 및 보고서 등 평가
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	30	-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,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, 의견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

② 편성영역(230점)

평가항목	배점 (230)	평가척도
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	45	- 재난방송/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, 교육실적(온라인 실적 포함) 등 상대 평가 ※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
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	40	- 07시~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8%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- 07시~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4%를 만점으로 절대평가
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	40	- 자막방송 편성비율 - 수어방송 편성비율 -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- 「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」 <별표>에서 정한 연도별/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「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
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	40	- 방송분야(보도 40%·오락 60%) 편성비율 평가

평가항목	배점 (230)	평가척도
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	50	-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,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/활용,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, 시청자 위원회 운영 만족도 등 평가
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	15	-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
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	10 (가점)	- 프로그램 편성실적, 편성시간대 평가
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	5 (가점)	- 재난특보 실시 횟수에 따라 평가

③ 운영영역(155점)

평가항목	배점 (155)	평가척도
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	35	-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-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,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
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·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	15	-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, 표준계약서 활용, 상해/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, 상생협의체 운영 등 평가
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	25	- 유동비율, 부채비율 등 평가
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	15	-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
장애인/여성 고용 평가	20	-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※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,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'19년 이후 3.1% - 여성 종업원수/평균 종업원수 :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- 여성 간부수/평균 간부수
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	15	-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,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, 방송교육,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- 1인당 교육비, 교육비/매출액
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	5	-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,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,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,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
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	15	-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사후조치, 내부교육 등 평가
아동·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적절성 평가	10	-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표 등 평가
환경 경영 노력 및 ESG 관련 이사회 보고	10 (가점)	- 환경경영 목표,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, 친환경 프로그램 편성 등 환경경영 노력 평가 - ESG 관련 이사회 보고 평가

④ 감점

평가항목	평가척도
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32조, 제33조,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-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/ ② 경고 2점/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·수정 또는 중지 4점/ ④ 방송편성책임자·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/ ②+③, ②+④ 5점/ ③+④, ②+③+④ 6점/ ⑤ 과태료 4점/ ⑥ 시정명령 8점/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, 위반유형을 방송심의회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, 선거방송심의회에 관한 특별규정, 방송광고 심의회에 관한 규정,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회에 관한 규정 중 '제1절 공정성', '제2절 객관성' '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' 규정 위반과 '선거방송 심의회에 관한 특별규정'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, 그 외 위반의 경우 1.5배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,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)
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	-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,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4조,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: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/ 시정명령 12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.5점 감점하되,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방송법,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	-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- 방송통신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
※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%로 설정

7. 방송채널사용사업자(보도분야)

■ 평가항목 및 척도(만점 500점)

① 내용 및 편성영역(350점)

평가항목	배점 (350)	평가척도
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	70	-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,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,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,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등을 평가
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	50	- 자막방송 편성비율 - 수어방송 편성비율 -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- 「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」 <별표>에서 정한 연도별/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「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
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	60	- 재난방송/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, 교육실적(온라인 실적 포함) 등 상대 평가 ※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
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	30	-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
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	40	-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,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,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
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	40	-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, 평가원 운영 및 보고서 등 평가
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	50	-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,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/활용,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, 시청자 위원회 운영 만족도 등 평가
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	10	-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
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	10 (가점)	- 프로그램 편성실적, 편성시간대 평가
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	5 (가점)	- 재난특보 실시 횟수에 따라 평가

② 운영영역(150점)

평가항목	배점 (150)	평가척도
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	30	- 유동비율, 부채비율 등 평가
방송콘텐츠 및 방송 기술 투자 평가	35	-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-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,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
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	15	-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
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	15	-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,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, 방송교육,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- 1인당 교육비, 교육비/매출액
장애인/여성 고용 평가	20	-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※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,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'19년 이후 3.1% - 여성 종업원수/평균 종업원수 :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- 여성 간부수/평균 간부수
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·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	10	-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
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	10	-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,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,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,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
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	15	-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사후조치, 내부교육 등 평가

③ 감점

평가항목	평가척도
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32조, 제33조,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-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/ ② 경고 2점/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·수정 또는 중지 4점/ ④ 방송편성책임자·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/ ②+③, ②+④ 5점/ ③+④, ②+③+④ 6점/ ⑤ 과태료 4점/ ⑥ 시정명령 8점/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,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,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,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,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

평가항목	평가척도
	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'제1절 공정성', '제2절 객관성' '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' 규정 위반과 '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'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, 그 외 위반의 경우 1.5배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,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)
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	-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,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4조,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: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/ 시정명령 12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.5점 감점하되,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방송법,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	-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- 방송통신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
※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%로 설정

8. 방송채널사용사업자(홈쇼핑분야)

■ 평가항목 및 척도(만점 500점)

① 내용 및 편성영역(200점)

평가항목	배점 (200)	평가척도
자체심의 및 허위과장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	60	-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,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,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, 허위과장 관련 자율 규제 등을 평가
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	40	- 자막방송 편성비율 - 수어방송 편성비율 -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- 「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」 <별표>에서 정한 연도별/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「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
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	25	-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, 평가원 운영 및 보고서 등 평가
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	25	-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, 방송통신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,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
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	20	- 재난방송/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, 교육실적(온라인 실적 포함) 등 상대 평가 ※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
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	25	-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,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/활용,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, 시청자위원회 운영 만족도 조사 등 평가
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평가	5	-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

② 운영영역(300점)

평가항목	배점 (300)	평가척도
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	40	- 유동비율, 부채비율 등 평가
방송콘텐츠 및 방송 기술 투자 평가	40	-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-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,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

평가항목	배점 (300)	평가척도
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	25	-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,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,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,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
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	30	-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
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	30	-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,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, 방송교육,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- 1인당 교육비, 교육비/매출액
장애인/여성 고용 평가	30	-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※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,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'19년 이후 3.1% - 여성 종업원수/평균 종업원수 :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- 여성 간부수/평균 간부수
협력업체 만족도 평가	30	-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결과 등 평가
상품선정 기준의 적정성 평가	30	- 상품(납품업자)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
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	30	-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 등을 평가
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	15	-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사후조치, 내부교육 등 평가

③ 감점

평가항목	평가척도
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32조, 제33조,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-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/ ② 경고 2점/ ③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·수정 또는 중지 4점/ ④ 방송편성책임자·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/ ②+③, ②+④ 5점/ ③+④, ②+③+④ 6점 ⑤ 과태료 4점/ ⑥ 시정명령 8점/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 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, 위반유형을 허위·과장 광고(제2장 제5조 일반원칙, 제15조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, 제23조 최상급 표현)와 제2장(허위·과장 광고 관련 제외), 제3장, 제4장, 제5장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허위·과장광고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, 그 외 위반의 경우 1.5배 감점 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)

평가항목	평가척도
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4조,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: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/ 시정명령 12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/ 5천만원 초과인 과징금 부과시 22.5점 감점하되,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인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방송법,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	-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- 방송통신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인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
※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%로 설정

9.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(TV/라디오방송)

■ 평가항목 및 척도(만점 300점)

① 내용 및 편성 영역(100점)

평가항목	배점 (100)	평가척도
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종합 평가	30	- DMB용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
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	25	-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 실적의 상대 평가
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	25	- 재난방송/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, 교육실적(온라인 실적 포함) 등 상대 평가 ※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
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	15	-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,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,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
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	5	-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,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,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

② 운영영역(200점)

평가항목	배점 (200)	평가척도
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	45	- 유동비율, 부채비율 등 평가
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	45	-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-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,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
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 평가	35	-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
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	30	-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,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, 방송교육,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- 1인당 교육비, 교육비/매출액
장애인/여성 고용 평가	30	-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※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,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'19년 이후 3.1% - 여성 종업원수/평균 종업원수 :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- 여성 간부수/평균 간부수

평가항목	배점 (200)	평가척도
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·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	10	-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
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	5	-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,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,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,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

③ 감점

평가항목	평가척도
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32조, 제33조,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-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/ ② 경고 2점/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·수정 또는 중지 4점/ ④ 방송편성책임자·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/ ②+③, ②+④ 5점/ ③+④, ②+③+④ 6점/ ⑤ 과태료 4점/ ⑥ 시정명령 8점/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,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,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,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,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'제1절 공정성', '제2절 객관성' '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' 규정 위반과 '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'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, 그 외 위반의 경우 1.5배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,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)
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	-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,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	- 방송법 제4조,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: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/ 시정명령 12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.5점 감점하되,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
평가항목	평가척도
방송법,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	-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- 방송통신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/ 시정명령 8점/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/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(단,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)

※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%로 설정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10 - 1267